

보호무역의 경제적 비용과 비관세 장벽에 관한 연구

최병철
경제학과

〈요 약〉

최근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공산품 수입에 대하여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같은 신보호무역의 특징은 가격에 의한 규제 보다는 비가격 조치로의 집중이며,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운용에 있다. 그리고 GATT 정신에 위배되게 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무역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후생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각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치적 이해와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에 따라 자유무역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관세 장벽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무역의 비율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 수입의 약 20%가 비관세 장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이 완화 될 경우 개발도상국은 막대한 후생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은 1989년 총수출 중 비관세 장벽 하의 수출 비율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출 중에서는 22.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총수출 중에서 50%를 차지하는 섬유류, 철강제품, 신발류 그리고 전자제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비관세 장벽이 한국의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자간 협상이나 쌍무협상에 있어서도 비관세 장벽의 논의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최대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비관세 장벽에 관한 철저한 연구와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즉 통상마찰을 줄이면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규제 하에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개발이 요구 된다.

Costs of Protection and Non-Tariff Barriers

Choi, Byongcheol
Dept. of Economics

〈Abstract〉

Recently, a number of industrial countries have introduced or increased protection against manufactures imported from developing countries by imposing non-tariff barriers(NTBs). Striking features of the new protectionism are that it has used the nonprice measures, focused on the limited sectors and concentrated on supply from Japan and NICs. Also, costs of protection are huge in the world economy. Especially, if non-tariff barriers are removed, developing countries will make gains about 80% of total gains, but developing countries will lose from the tariffs cuts only due to an adverse terms of trade move. Therefore, non tariff barriers are more important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developed countries.

Despite of theses costs, about 34% of industrial countries'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were under import restrictions in 1983 and 21% of industrial countries' manufactures imports were under restrictions. In the case of Korea, 22.1% of Korea exports to industrial countries were restricted in 1989. Among them, Canadian market(23.9%) was the highest and Japan (23.7%), EC(22.3%) and the U.S. (20.1%) followed. According to major exporting commodities, textiles and clothing(35.8%) was restricted the highest under the MFA except cutlery and fish. At this point, we continue to diversify our exporting markets and try to export high-value added products to get more profits under the restrictions.

I. 서 론

1970년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1930년 대와 비슷한 보호주의 무역으로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0년 대와는 달리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한 관세의 인하로 관세의 수단이 줄어들면서 비관세 장벽의 수단이 주로 이용 되어졌다.¹⁾ 특히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비관세 장벽 수단을 통하여 보호무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같은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통상마찰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관세 장벽에 관한 연구는 Balassa(1984), Deardorff(1985), Nogues(1986) 등에 의하여 선진국의 수입에 중점을 두면서 분석되었으며, 비관세 장벽의 규제를 받는 수출국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호무역의 후생효과에 관한 경제적 비용도 Cline(1978), Deardorff(1979), Whalley(1980) 등에 의하여 세계 무역에 대한 일반균형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주로 선진국의 이해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²⁾ 최근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비관세 장벽의 규제를 받는 특정부분에 대한 보호무역의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³⁾

1) 비관세 장벽 수단을 주 규제 수단으로 사용한 1970년 대 이후의 보호무역을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라 하면, 관세 수단을 주고 이용한 1930년 대의 보호무역을 구보호무역주의(old protectionism)로 구별 할 수 있다.

2) 국별 연구로는 미국의 경우 Hufbauer(1986)에 의하여 각 산업별로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3) Jeon(1990)은 시장질서유지 협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과 브라질의 비고무화 신발류 산업에 있어서의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증가 추세에 있는 비관세 장벽의 특징을 고찰하고, 보호무역의 후생효과를 추정한 문헌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과 비관세 장벽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서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을 찾아보았다. 따라서 제II장에서는 비관세 장벽의 증가와 함께 신보호무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보호무역의 후생효과를 분석한 문헌을 토대로 하여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후생효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같은 세계적인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 완화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이해와 관련된 경제적 불복화가 논의 되면서 새로운 장벽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장벽은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VI장에서는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비관세 장벽을 살펴보며, 특히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의 비관세 장벽을 수출 국가별, 수출 품목별 그리고 형태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V장에서 분석 결과에 토대로 차후 통상협상에 대한 무역정책을 논의하였다.

II. 신보호무역주의의 추세

1. 관세의 인하

1940대 이후 여러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전통적인 장벽이 되어왔던 관세는 크게 인하되었으며,⁴⁾ 특히 1968년에 타결된 캐네디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세가 전반적으로 50% 정도 인하되었다. 그 결과 몇개의 민감 품목 (예를 들면 철강류, 섬유류, 의류 및 신발류)을 제외하고 공산품 총수입에 대한 평균 관세가 미국에서는 41%, EC에서는 40%, 그리고 일본에서는 42% 만큼 각각 인하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있어서 미국, EC 및 일본은 평균 관세를 각각 31%, 36%, 35% 만큼 인하시켜 10%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관세 인하로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미국에서 7%가 되었으며 EC와 일본에서는 각각 8.3%와 10.0%가 되었다.⁵⁾

이와같은 분위기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역 자유화는 더욱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더욱 1979년의 도쿄 라운드의 타결로 관세의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주요 선진국에 있어서 관세가 1/3 가량 인하되어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 품목에 대한 평균 수입 관세가 EC에서는 4.7%로 떨어졌고 일본은 2.8%로, 미국은 4.4%로 떨어졌다. 그중 공산품 수입에 대한 평균 관세는 미국 4.9%, EC 6.0%, 그리고 일본에서는 5.4%로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대한 평균 관세는 약간 높은 수준인 8.7%, 6.7%, 6.8%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4) 제네바 라운드(1956), 딜론 라운드(1962)

5) Bela and Carol Balassa, "Industrial Prote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World Economy 1984, pp. 179-180.

〈표 1〉 도쿄라운드 합의 후 선진국의 평균 수입관세

(단위 : %)

수입국	원 료	공산품	전품목	개발도상국
E C	0.2	6.0	4.7	6.7
일 본	0.5	5.4	2.8	6.8
미 국	0.2	4.9	4.4	8.7

자료: Elliott and Williamson(1988) *World Economic Problems*, IEE Washington, p 59

Balassa(1984) "Industrial Prote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World Economy*, vol. 7 p 181

뿐만 아니라 EC가 제시한 일반적인 지침 공식(Swiss formula)⁶⁾인 평균 이상인 높은 관세를 평균 이하인 낮은 관세보다 더 많은 폭으로 인하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관세 체계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중반에 40%에 달했던 선진국의 관세율이 도쿄 라운드 타결 이후에는 평균 4~5% 수준에 불과한 정도로 낮아졌다. 이와같이 관세 인하를 통한 세계 무역의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 등의 해결 수단으로 선진국들은 관세 이외의 규제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EC는 최초로 일본으로 부터의 섬유와 의류 수입에 대한 수량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개발도상국에 까지 적용하였다.⁷⁾ 그리고 1982년의 GATT 각료 회담이 수출 보조금과 수입 제한에 대한 미국과 EC(특히 프랑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결렬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정신이 퇴색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후 자유무역을 주도하여 왔던 미국에 있어서도 보호주의로의 강한 복귀 현상이 대두되었다.

2. 비관세 장벽의 증가

제2차 세계대전 후 GATT 등을 통한 세계 무역의 자유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최근 10여년 간에 걸친 비관세 장벽의 사용 증가 현상은 이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섬유,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의 비교우위가 상실되어가고, 그동안의 여러차례에 걸친 GATT의 다자간 협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크게 인하되면서 관세의 무역 규제적 역할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비관세 장벽이 많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무역 불균형 특히 미국 등의 대규모 적자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사용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해 도쿄 라운드 협상에서는 관세 평가, 수입허가 절차, 정부조달,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 기술장벽, 쇠고기, 낙농품 및 민간 항공기 등 9개 분야

6) Swiss formula : $t_n = (k \times t_o) / (k + t_o)$ 여기서 t_o 와 t_n 은 각각 인하 전과 인하 후의 관세 그리고 k 는 각 국가에 따라 0.14-0.16 범위 내의 상수

7)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기원이 되는 면직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장기협정(LTA)을 1962년에 체결하였다.

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체결되었다.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수출 국가와 상품 품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EC의 주장과 그와 같은 차별적인 방법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의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농산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철강, 가전제품 및 선박 등의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에 관한 논의가 도쿄 라운드에서 제외되어, 이를 산업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비관세 장벽의 도쿄 라운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같이 관세율의 점진적인 감소 추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이 증가하는 신보호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첫째, 가격에 의한 규제보다는 비가격 조치(nonprice measures)로의 집중 현상이다.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반덤핑조치, 행정지도, 보조금 등) 둘째, 특정 부문의 요구에 따른 선별적인(selectivity) 적용이다.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신발, 가죽제품, 도자기, 선박, 철강, 가전제품, 시계, 자동차, 공작기구와 몇몇 하이테크 산업 등) 셋째, 특히 일본과 NICs와 같은 경쟁국과 동구 유럽에 대하여 차별적(discrimination)으로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비관세 장벽의 수단

비관세 장벽은 관세 수단 이외의 무역 장벽을 말하며 특정국의 자국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외국 제품이 수입될 경우에 자국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모든 공적 규제 또는 정부 관행을 의미한다. Bhagwati(1988)에 의하면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크게 두 종류로 특징지어지며,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등과 같이 GATT의 규정을 우회하여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과, 부당한 방법에 의한 세계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전진한 무역 풍토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GATT에서 규정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와 덤핑방지세(Anti-Dumping Duties) 조항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되어 진다고 하였다.⁹⁾

이와같은 비관세 장벽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비관세 장벽을 무역 규제를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직접적인 비관세 장벽의 수단과, 다른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그 중 일반적으로 각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중요한 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수입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수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수입상한선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수입할당제(import quota)가 대표적인 수단이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량쿼터(global quota)와 국별쿼터(country-specific quota)로 구분된다. 또한 국별 쿼터는 쿼터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쌍무쿼터(bilateral quota)와 일방적 쿼터(unilateral quota)로 구분된다.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수입금지(import prohibitions)와 특정기관에 수입권을 한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입기관의 지정(discretionary import authorizations)과

8) 보다 자세한 협상 내용은 Whalley(1985) Trade Liberalization among Major World Trading Areas, MIT Press, pp. 160-165 참조

9) Bhagwati(1988), Protectionism, The MIT Press, pp. 43-44. Bhagwati는 전자는 "high-track" restraints로 후자는 "low-track" restraints로 구별하였다.

〈 표 2 〉 비관세 장벽의 수단

직접적인 수단	수량적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관세할당(Tariff quota)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 재정적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행정적 수입허가절차(Import licensing)
간접적인 수단	재정적 공기업에 대한 보조(Subsidisation of public enterprises) 지역별 보조(Regional subsidisation) 행정적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제(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환경 보존(Environmental controls) 관세평가 절차(Customs valuation procedures) 원산지(Marks of origin)

수입업자에게 수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수입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일정한 의무를 강요하는 조건부 수입허가제(conditional import authorizations) 등이 있다.

b.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수입국과 수출국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수출량의 상한선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수입규제의 위협이 있는 품목을 사전에 발굴하여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자율규제하는 순수 자율규제와, 정식 쌍무협정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출물량을 정하는 쌍무합의에 의한 자율규제로 구분 될 수 있다. 이 수출자율규제는 각국 정부간 또는 민간 상호간의 쌍무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협상 내지는 합의 과정에서 수입국으로부터 보다 엄격한 일방적 규제의 위협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¹⁰⁾ 이러한 수출자율규제에는 다자간섬유협정(MFA : Multi-fibre Arrangement)에 의하여 섬유 수출입국 간에 체결하는 쌍무협정도 포함된다.

c. 관세할당(Tariff Quotas) : 관세와 수입할당의 특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낮은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는 쿼터량을 설정해 놓고 쿼터량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세할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와 더불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0)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 Orderly Marketing Agreement)과의 차이는 경제적 보다는 법적인 성격을 더 띠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순수자율규제와 1979년 통상법에 의거 쌍무협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시장질서유지협정과 구분하기도 한다.

III. 보호주의의 경제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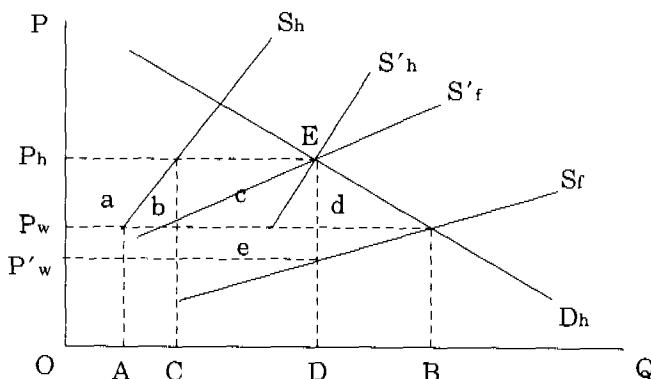
1. 이론적 배경

보호무역 특히, 관세의 부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일반균형 분석과 부분균형 분석을 통하여 이미 정형화 되었다. 여기에서는 경제 대국, 즉 관세 부과가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후생효과를 부분균형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도표 1〉은 특정재에 대한 수입국의 시장을 나타낸다. D_h 와 S_h 는 각각 수입국의 국내 수요곡선과 수입품과 완전 대체 가능한 국내생산 공급곡선을 나타내며, 관세 부과국이 수입재의 상당한 량을 구매하여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대국일 경우에 외국의 공급곡선은 S_f 로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동일한 P_w 로 결정되며 OB의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OA의 국내 생산과 AB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외국 공급곡선은 S_f 에서 S'_f 로 이동하게 되며 국내 가격은 P_h 로 상승한다. 그러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은 P_w' 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생산은 AC 만큼 증가하고 소비는 BD 만큼 감소하여 관세 부과 후의 수입량은 CD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a+b+c+d$ 로 나타나며 순수한 후생 감소는 $b+d$ 로 나타난다. 즉 a 는 생산자 잉여로 재분배 되며 c 는 정부의 관세 수입으로 돌아간다. 한편 관세 부과로 인한 교역조건의 변화로 외국의 공급자가 관세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관세 부과 당국으로 e 만큼 재분배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관세 부과국 만의 후생 변화를 고려했을 경우 e 만큼의 소득 재분배는 후생 증가가 된다. 그러므로 $e > b + d$ 인 경우에는 관세 부과 후에 관세 부과국은 후생이 증가하며 $e < b + d$ 인 경우에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한 소득의 배분배보다 크기 때문에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 도표 1 〉 보호무역의 후생 효과



비관세 장벽 수단 중 수량제한(Quantitative Trade Restrictions: QTRs)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관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경제적 비용은 〈도표 1〉에서와 같이 $b+d$ 로 나타난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입국의 시장가격은 세계가격과 동일한 수준인 P_w 에서

결정되며 OB의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OA의 국내생산과 AB의 해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이 때 수입을 반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량제한이 이루어지면, 수입국의 시장가격은 쿼터량 만큼 국내 공급곡선 Sh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총공급곡선 Sh'가 수요곡선과 만나는 E점에서 이루어지는 Ph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해외의 각 생산업자들은 공급의 과잉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세계시장의 공급가격은 당초의 Pw보다 낮은 Pw'가 된다. 따라서 수량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내가격의 상승폭은 전적으로 쿼터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같은 수량제한의 후생효과를 보면 소비자 잉여는 $a+b+c+d$ 만큼 감소한다. 그러나 c의 소비자 잉여 감소 분은 쿼터렌트(quota rents) 수령인에게 이전되며, a는 국내 사장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내 공급자의 시장 참여로 국내 공급자가 얻게되는 공급자 잉여로 재분배 된다. 그리고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쿼터렌트의 증가가 e만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량제한에 의한 순수한 자중손실은 소비자 잉여 감소 d와 생산자 잉여 감소 b로써 b+d로 나타난다. 그러나 만약 쿼터렌트가 수입국의 국민에게 이전되지 않고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후생손실이 더 발생 된다.

〈 표 3 〉 쿼터렌트의 귀속 관계

시장형태	수량제한 형태	관리방법	귀속자
완전경쟁	수입할당	허가증 발급	수입업자
	수출할당		수출업자
수입자 독점	수출할당	허가증 발급	수입업자
	수입할당		수출업자
	수입할당		해외의 생산업자
	수입할당	경매	수입국 정부
	수출할당		수출국 정부

쿼터렌트가 누구에게 이전 되느냐는 다음 요인들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수입업자, 수출업자, 해외의 생산업자, 수입국의 정부 또는 수출국의 정부에게 귀속된다. 첫째, 수출과 수입산업, 그리고 생산자 산업에 있어서의 시장구조(즉, 독점력). 둘째, 수량제한의 형태(수입할당 혹은 수출할당). 세째, 쿼터량을 관리하는 방법. 이와같은 요인들에 의한 쿼터렌트의 귀속 여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즉 쿼터의 허가권을 정부가 경매를 하거나 팔 경우에 쿼터렌트는 각 국의 정부에 귀속된다. 그러나 쿼터 허가권이 수입실적이나 수출실적 등의 방법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쿼터 허가권을 소지한 자에게 쿼터렌트가 귀속되지만, 완전경쟁이 아닌 경우에는 쿼터 허가권을 갖고 있더라도 쿼터렌트를 누릴 수 없다. 완전경쟁이 아니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력을 행사하는 수입업자, 수출업자, 혹은 해외의 생산업자에게 귀속된다.¹¹⁾

11) 시장 형태에 따른 쿼터렌트의 귀속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Bergsten(1987)의 부록을 참조.

2. 관세와 수량제한의 비교

<도표 1>에서 관세와 수량제한의 경제적 효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인 후생 변화는 $b+d$ 로 같으며, 관세 부과의 경우에는 소비자에서 관세 부과 당국으로 재분배되는 c 가 관세 수입이 되며 수량제한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쿼터 렌트가 된다. 따라서 관세와 수량제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수입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관세의 경우에 규제 방법이 가격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수량제한의 경우는 가격 기능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2) 수량제한에 있어서는 해외에서의 가격변동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수입품의 가격은 전적으로 수입국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3) 수량제한 하에서는 국내기업에 의한 가격 상승 시, 소비자들이 수입품으로의 소비 전환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의 독과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수량제한에 의하여 실제로 독점이나 과점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¹²⁾

(4) 수량제한된 상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가가 있게 되면, 관세보다 수량제한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특히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전반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친다.

(5) 수량제한은 장기적으로 국내 수요의 변화나 비용의 변화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다. 특히 수입경쟁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수량제한에 의한 규제는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의 증가를 초래하면서 순자중손실이 관세의 경우보다 크다.¹³⁾

(6) 수량제한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수출업자로 부터의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보호수단으로써의 수량제한이 관세보다 덜 바람직한 방법이며,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산업이 있다면 관세가 선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무역의 규제 수단으로서 관세에 비해 더 선호되는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는 첫째, 제2차대전 이후의 국제적인 무역의 자유화 과정에서 관세가 크게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40여년간 다자간 협상 (MTN : Multi-National Negotiations)에 의해 선진국의 관세율 수준이 크게 인하되어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관세의 역할이 그 만큼 미약해 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관세율을 변경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복잡한 정치적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는 관세 수입 등의 정부 재정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회 등의 토론 및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관세는 GATT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 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대국과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관세율 수준을 임의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세째, 수출국에 쿼터렌트의 획득이라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보복위협이나 보상의무를 부담함이 없이 수출제한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네째, 수량제한은 수입물량을 일정한 선 이하로 억제 할 수 있어 수입증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제공한다. 다섯째,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여섯째, 수입 급증의 주 원인인 주요 수출국

12) Bergsten, Elliott, Schott and Tackace(1987), Aucton Quotas and U.S. Trade Polic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pp. 28-29.

13) 경제성장과 관련된 수량제한의 효과는 Greenaway(1983), International Trade Policy, Macmillan Press, pp. 136-137 참조.

이나 특정 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이며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는 것 등이다.

3. 실증분석 고찰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추정은 순자중손실의 계산에 의한 단기적인 후생비용을 수량화함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부분균형 이론에 의하여 일반적인 수요함수를 이용한 Marshallian Triangle Method와 보상 수요함수를 이용한 Hicksian Welfare Measures로써 보호무역의 후생비용을 추정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추정하는데 따르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추정된 후생비용이 실제 보다 과소 평가 되거나 과대 평가 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¹⁵⁾ 특히 부분균형에 의한 추정은 모든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후생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와같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하여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일반균형 분석에 의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균형 분석을 위한 모델 설정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막대한 시간과 자료를 요하며, 결과 자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GATT에 의한 케네디 라운드와 도쿄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을 계기로, 비관세 장벽과 관세의 인하가 미치는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Magee(1972)는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미국의 후생에 미치는 결과를 추정하였다. Magee에 의하면 관세만 철폐할 경우 미국은 1억 불 정도의 후생이 증가하며,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30억불의 후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¹⁶⁾ 이와같은 수치는 연관 산업의 효과와 상대국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균형 분석에 의한 것인가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Magee의 결과에서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비용이 관세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Whalley(1982)는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무역에 관한 일반균형 모델을 실제로 설정하여 보호주의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1973년 세계무역 자료를 이용한 Whalley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전세계적으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지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모든 보호주의 무역 수단이 철폐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293억불의 후생이 증가하며, 관세만 철폐되는 경우는 64억불, 비관세 장벽만이 철폐될 경우에는 245억불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국가는 EC, 미국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지역으로써 총 이득의 50%를 넘는 151억불의 후생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만이 철폐될 경우에는 총 이득의 85% 이상인 210억불의 후생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관세만

14) 보호무역의 후생효과 추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B. N. Jeon and G. M. von Furstenberg (1986), Techniques for measuring the Welfare Effects of Protection : Appraising the Choices, Journal of Policy Modeling 8(2), pp. 272-303 참조.

15) Greenaway(1983)는 기술적인 문제로써 (i) 가격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의 추정 (ii) 수요변화에 따른 문제 (iii) 수요곡선의 선형화 문제 (iv) 다른 정책과 결부된 결과 등을, 그리고 실증분석 상의 문제로써 (i) 수요곡선의 탄력성 선택 (ii) 상품 분류 (iii) 시간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재할인율 적용 등을 들고 있다.

16) Magee(1972), "The Welfare Effects of Restrictions on U.S. Trad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 pp. 706-707.

17) Whalley는 보호무역의 후생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Four-region Model (EC, 미국, 일본, Rest of World)과 7개 지역으로 나눈 Seven-region Model (EC, 미국, 일본, 기타 선진국, OPEC, NICs, LDCs)을 사용하였다.

철폐될 경우 기타지역은 43억불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진국의 관세가 주로 공산품에 집중되어 있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 공산품의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며 또한 기타지역의 주종 수출품인 원료와 농산물에 대한 교역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 표 4 〉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후생 효과

(단위 : in billions of 1973 dollars)

	EC, 미국, 일본의 동시 철폐			모든 지역 동시 철폐		
	관세	비관세장벽	모든수단	관세	비관세장벽	모든수단
EC	-1.5	-3.5	-5.5	7.2	3.0	11.0
미국	-2.3	-1.3	-4.5	1.4	2.1	2.8
일본	0.3	-2.6	-2.7	2.1	-1.6	0.4
ROW*	4.8	27.2	32.9	-4.3	21.0	15.1
총계	1.3	19.8	20.2	6.4	24.5	29.3

자료 : Whalley(1985), Trade Liberalization among Major World Trading Areas, MIT Press, p181.

주 : * ROW (Rest of World) : EC, 미국,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따른 후생효과가 관세 철폐에 따른 후생효과 보다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기타지역의 후생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이 농산품과 원료 등 기타지역의 주요 수출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EC, 미국, 일본이 동시에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 기타지역은 272억불의 후생이 증가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은 기타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의 후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표 5 〉 보호무역에 따른 후생효과 결과 비교

(단위 : billions of 1973 dollars)

	미국	캐나다	E C	일본
Cline	0.904	0.224	0.489	0.277
Deardorff and Stern	0.792	0.226	1.304	0.124
Brown and Whalley	0.81	—	1.45	0.45
Whalley	2.8	—	11.0	0.4

자료 : Brown and Whalley(1980), "General Equilibrium Evaluations of Tariff-Cutting Proposals in the Tokyo Round and Comparisons with More Extensive Liberalization of World Trade", *Economic Journal*, 90. Deardorff and Stern(1981), "A Disaggregated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 An Estimate of the Impact of the Tokyo Round", *Journal of Policy Modeling*, 3(2). Whalley(1982), "An Evaluation of the Tokyo Round Trade Agreement Using General Equilibrium Computational Methods", *Journal of Policy Modeling*, 4.

이와같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전반적인 후생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Whalley 이외에도, 도쿄 라운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 협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Cline(1978), Deardorff와 Stern(1979), 그리고 Brown과 Whalley (1980)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표 5참조). Cline의 연구 결과를 보면, 주요 선진국이 1973년 기준의 공산품 관세를 60% 인하하였을 경우 후생 증가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으며,¹⁸⁾ Deardorff와 Stern의 도쿄 라운드 합의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에서는 Whalley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보다 EC에서 후생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주의 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EC 지역이 가장 심한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미국과 일본 순으로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GATT의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EC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후생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인하여 상당한 후생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이루어 진다면 자유무역으로 인한 후생의 증가가 더욱 커질 것이다.

VI. 비관세 장벽과 세계무역

1. 세계무역에서의 비관세 장벽

현존하는 비관세 장벽을 정확하게 수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비관세 장벽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삭벽하기가 어렵고, 기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각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수단에 대한 충분하고 세부적인 무역자료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나 최근에 비관세 장벽의 무역이 총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의 규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¹⁹⁾

- (i) 수입금액 비율(import coverage ratio) : 일정한 상품 카테고리별 비관세 장벽 하의 수입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18) Greenaway(1983), *International Trade Policy*, pp. 119-122.

19) Nogues, Olechowski and Winters(1986), "The Extent of Nontariff barriers to Imports of Industrial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798, pp. 9-10.

(i) 품목수 비율(frequency ratio) : 일정한 국별 상품 카테고리별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비관세 장벽 규제를 받는 품목수가 전체 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표 6 〉 비관세 장벽 하의 선진국 수입 비율

1983년 (단위 %)

수입국	수출국	연 료	농산품	공산품	전품목	섬유류**
선 진 16개국*	선진국	59.5	40.5	14.5	21.0	17.1
	개도국	51.9	31.2	21.3	34.3	22.5
	전세계	43.0	36.1	16.1	27.1	18.6
미국	선진국	99.8	23.5	16.5	26.0	16.6
	개도국	99.9	25.1	18.6	54.0	18.9
	전세계	100	24.2	17.1	43.0	17.3
EC	선진국	14.7	47.7	15.2	18.6	18.9
	개도국	22.3	26.9	19.9	25.4	26.9
	전세계	24.4	36.4	18.7	22.3	21.1
일본	선진국	52.8	36.8	9.7	21.4	16.9
	개도국	6.7	53.3	4.4	12.1	17.2
	전세계	7.0	42.9	7.7	11.9	16.9

자료 : Nogues, Olechowski, and Winters(1986), "The Extent of Nontariff Barriers to Imports of Industrial Countries."

주 : * 선진 16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페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포함

** 전품목 수입중에서 비관세장벽 하의 섬유류 수입 비율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Balassa(1984)는 1980년도 비관세 장벽 하의 공산품 수입 비율이 미국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EC와 일본에서는 각각 10.8%,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²⁰⁾ 그리고 Nogues, Olechowski, 와 Winters(1986)의 연구 결과에(〈 표 6 〉) 의하면 1983년 총 공산품 수입 중에서 선진 16개국의 비관세 장벽의 수입 비율이 16.1%로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표 6 〉에서 보면 공산품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에 의한 수입 비율이 미국과 EC는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과 EC는 선진국으로 부터의 수입보다도 개발도상국으로 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대하여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연료를 제외하고는 농산품과 섬유류 산업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이 가장 오랫동안 전형적으로 선진국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의 보호무역을 완화하려는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문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농산품과 섬유 산업의 이와 같은 정책이 다른 산업 즉 철강, 제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 되고 있다.

20) Balassa(1984), "Industrial Prote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World Economy, p. 1877, Table 4.

2. 한국무역에서의 비관세 장벽

무역 불균형, 외채, 산업구조 조정 지연 등의 문제로 국가간 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꾸준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수출 급증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에 따라 한국의 주종 수출 산업인 석유, 철강, 신발류 및 일부 전자 제품에서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의 규제도 증대되고 있다.

1986년도에 비관세 장벽 영향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수입 비율을 보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석유류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 중 41.8%를 나타내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26.2%와 선진국에 대한 21.1%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산품 수입에 있어서 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39.3%로써 개발도상국 31.0%, 선진국 17.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²¹⁾

〈 표 7 〉 비관세 장벽 하의 한국 수출

(단위 : US\$ 백만, %)

년 도	총 수 출 (A)	파규제품목수출 (B)	대선진국수출* (C)	비 율 (B/A)	비 율 (B/C)
1976	7,715	1,666	5,999	21.6	27.8
1981	21,254	6,025	13,168	28.4	45.8
1983	24,445	6,490	16,270	26.5	39.9
1985	30,283	7,649	20,889	25.3	36.6
1986	34,714	8,117	26,179	23.4	31.0
1987	47,281	10,372	36,437	21.9	28.5
1988	60,696	10,169	53,188	16.8	19.1
1989	62,377	10,030	45,444	16.1	2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종합], 각년호.

대한무역진흥공사, [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각년호.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호.

주 : 수입규제 조사 중에 있는 품목의 수출실적 제외

* 선진국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C 12개국, 페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한편 한국의 수출액을 기준으로 비관세 장벽의 규제도를 보면 〈표 7〉과 같이 한국의 총 수출에서 비관세 장벽 하의 수출 비율이 1976년의 21.6%에서 1985년에는 25.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1989년에는 16.1%를 나타내고 있다. 대선진국 수출 중 비관세 장벽 하의 수출 비율은 1986년 까지 3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9년에는 22.1%로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최근의 감소 현상은 선진국의 자유무역 정책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한국의 급속한 수출 증가율과 수출 시장의 다변화에 의한 것이다.

선진국과의 교역 상대국별로 본 비관세 장벽 하의 한국의 수출 현황을 보면, 1989년 캐나다

21) KIET, 세계경제동향, 제5권 제8호, 1987, p. 56, 표1 참조.

에 대한 한국의 수출 중 규제하의 수출이 2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본이 23.7% 그리고 호주가 10.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한국의 교역 상대국별 비관세 장벽

(단위 %)

년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C
1976	37.5	39.3	14.5	34.3	31.6
1981	50.6	45.6	48.5	26.7	39.3
1983	42.5	42.9	48.7	34.8	28.2
1985	43.3	31.1	32.0	34.7	29.5
1986	33.3	35.2	19.6	25.9	35.7
1987	26.5	42.9	19.4	20.8	41.0
1988	19.3	25.2	19.7	14.2	33.7
1989	20.1	23.9	23.7	10.6	22.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총람], 각년호.

대한무역진흥공사, [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각년호.

그리고 〈표 8〉에서 보면 1985년 이후로는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한국 수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캐나다와 EC에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198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85년 이후 한국의 총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비율이 감소하였을 뿐, 장벽 자체가 감소한 것을 아니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수지의 흑자를 실현하게 되었다. 특히 1989년 EC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수입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액 자체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²²⁾

〈 표 9 〉 품목별 규제 현황

(단위 : %)

년도	섬유류	철강제품	신발류	전자제품	금속제양식기	수산물
1976	48.1	2.4	63.2	0.3	35.7	19.4
1981	51.0	46.1	71.0	14.4	29.6	29.9
1983	59.1	39.0	79.5	24.4	79.6	26.3
1985	64.6	27.1	87.5	17.4	24.2	23.5
1986	53.7	30.1	17.7	36.4	39.9	26.2
1987	49.9	25.6	24.3	31.0	36.2	26.8
1988	39.0	14.2	16.6	9.9	62.3	91.4
1989	35.8	9.9	14.6	5.6	63.1	93.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총람], 각년호.

대한무역진흥공사, [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각년호.

품목별로 본 비관세 장벽 하의 한국의 품목별 수출 비율은(〈표 9〉 참조), 정부간 협정에 의한 다자간 섭유 협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섭유및 의류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5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철강제품, 전자제품, 금속제 양식기 그리고 수산물에 있어서는 1988년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주로 미국과 EC로부터 정부간 협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철강제품의 경우에, 1987년 이후 철강제품 총수출액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규제 하의 수출 실적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1989년에는 규제 하의 수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0% 정도 감소 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으로 부터 일방적 쿼터로 규제를 받는 수산물은 총수출액이 1987년에 비해 1988에는 80%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1987년의 31.0%에서 1988년에는 9.9%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것은 반덤핑 및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1987년에 11억불에서 1988년에는 2억3천만불로 약 78% 감소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에 특허권과 지적소유권에 대한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속제양식기의 경우는 전자제품과는 반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하의 대미 수출액이 2배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 초에 80% 수준을 기록했던 신발류는 1986년도에는 17.7%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미통상법 201조 긴급수입제한으로 제소를 받은 바 있는 비고무화 신발이 무협의로 판정을 받은 것에도 기인한다. 이와같은 품목별 규제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 규제는 주로 한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몇개의 산업에 집중됨을 알수 있다.²³⁾

〈 표 10 〉 국별, 규제 형태별 규제 현황

1990년 4월 말 현재 (단위:건)

	미국	캐나다	EC공동	유럽각국	호주	일본	계
수량규제	3	1	2	22	10	11	49
쌍무쿼터	1	1	1	13	—	2	18
일방적국별쿼터	—	—	1	3	—	5	9
수출차율규제	2	—	—	5	—	2	9
총량쿼터	—	—	—	1	—	—	1
관세쿼터	—	—	—	—	10	2	12
가격규제	7	16	8	—	2	—	33
반덤핑관세	6	16	5	—	1	—	28
가격인상약속	—	—	3	—	1	—	4
상계관세	—	—	—	—	—	—	—
반덤핑및상계관세	1	—	—	—	—	—	1
기타규제	2	—	—	—	—	—	3
수입배제명령	2	—	—	—	—	—	2
수입사전확인제	—	—	—	—	—	1	1
계	12	17	10	22	12	12	8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 종합], 1990년 5월.

유럽각국은 서독, 영국,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이태리.

건별 규제 현황으로 보면 90년 4월말 현재 한국은 20개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총 85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표 10〉 참조), 15건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조치 실시 여부의 판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²⁴⁾ 이는 1985년의 100건에서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 중 수량규제가 49건으로써 다수를 이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EC는 주로 앤벌프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이용한 가격규제를 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은 대부분 섬유류에 대하여 쟁무쿼터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신발류, 의류, 피혁제품에 대하여 관세쿼터 만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은 수산물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쿼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선어류와 김에 대하여는 1960년대 부터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V. 결 론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바람직하며, 만약 특정 산업에 대하여 보호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관세가 비관세 장벽보다는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우루파이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에서도 비관세 장벽의 관세로의 전환 문제가 논의 되고 있으나 각 국의 정치적인 문제와 이해 관계로 인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실증분석 된 자료를 이용하여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비용과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 중에서 비관세 장벽에 관한 부분을 고찰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을 찾아 보았다.

우선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세계적인 후생의 감소는 관세보다 상당히 크며,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에 특히 개발도상국은 상당한 후생의 증가를 얻게 된다. 만약 관세만 인하된다면 선진국은 후생의 증가를 도모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오히려 후생이 감소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GATT에 의한 다자간 협상이 주로 관세의 인하에만 집중하여 선진국끼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협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도쿄 라운드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던 긴급수입제한과 비관세 장벽에 관한 문제 등 개발도상국의 대 선진국 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우루파이 라운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비관세 장벽은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수입의 약 20%가 비관세 장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의 약 30%가 비관세 장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섬유,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비교우위가 상실되어 가면서 이러한 특정 산업과 특정 국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공정 무역의 논란 대상이 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비관세 장벽 중 수출자율규제(VER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첫째, 수출국이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국에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치 않으며 자유무역의

22) EC 수입규제 하에 한국의 EC에 대한 1989년도 주요 수출상품을 보면 1988년에 비하여 섬유류가 13%, 칼라 TV가 32%, 그리고 VTR은 60% 정도 각각 감소하였다.

23) 1981-1989년 동안 한국의 섬유류, 철강제품, 신발류, 전자제품의 수출이 총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24) 1990년 4월말 현재 조사 중인 것은 미국에서 8건:긴급수입제한(1), 반덤핑(3), 지적재산권(4), EC 공동으로 6건:긴급수입제한(1) 반덤핑(5). 호주에서 1건:반덤핑(1). 팔호 안은 건수.

압력을 받을 성향이 적다. 둘째, GATT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GATT의 원칙을 피할 수 있다. 세째, 수입국에서는 소비자에게 보호무역의 비용을 쉽게 속일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무역 규제를 송락 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쿼터렌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한국의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이 줄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다. 1983년 한국 수출에 대한 20개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 수준은 40%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1989년에는 22%로 감소 하였다. 그 중 EC와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미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 경쟁력이 높은 몇몇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을 저해하는 중대한 무역장벽이 바로 이 비관세 장벽이며, 동시에 선진국으로부터 받는 수입개방 압력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의 무역협상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수출 시장을 다변화 시켜야 할 것이며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쿼터렌트가 수출국에 귀속되는 수출자 쿼터가 유리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수출하여 일정량 가운데 수익을 최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각 년호.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년호.

권기성, 경제마찰, 동양문고, 1989.

대한무역진흥공사, 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각 년호.

산업연구원, 세계경제동향, 1986, 1987, 1988, 1990년 각 월호.

한국무역협회, 주요 선진국의 수입 규제 종합, 각 년호.

Anderson, Kym and Robert E. Baldwin, "The Political Market for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Empirical Evidence",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492, October 1981.

Bhagwati, Jagdish, Protectionism, The MIT Press, 1988.

Balassa, Bela and Carol Balassa, "Industrial Prote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World Economy, vol. 7, no. 2, June 1984

Bark, Taeho, "The History, Institutional Framework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VERs in Korea", KDI Working Paper No. 8917, KDI, June 1989.

Bergsten, C. F., K. A. Elliott, J. J. Schott, and W. E. Takacs, Auction Quotas and U. S. Trade Policy,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7.

Brown, Drusilla, "A Computat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Tokyo Round Negotiation o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3(1), spring 1988.

Brown, Fred and John Whalley, "General Equilibrium Evaluations of Tariff-Cutting Proposals in the Tokyo Round and Comparisons with More Extensive Liberalisation of World Trade", The Economic Journal, 90, December 1980.

Cassing, James H. and Arye L. Hillman, "Political Influence Motives and the Choice between tariffs and Quotas", Journal of International

- Economics, 19, 1985.
- Cline, W. R., et al. Trade Negotiations in the Tokyo Round:A Quantitative Assessment, Washington:Brooking institution, 1978.
- Deardorff, Alan V., and Robert M. Stern, "A disaggregated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An Estimate of the Impact of the Tokyo Round", Journal of Policy Modeling, 3(2), 1981.
- Deardorff, Alan V., and Robert M. Stern, "The Structure of Tariff Protection:Effects of Foreign Tariffs and Existing NTB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 4, Nov. 1985.
- Dinopoulos, E. and Mordechai E.Kreinin, "Effects of the U.S. -Japan Auto VER on European Prices and on U.S. Welfare", Rev. Econ. Statist., 70(3), Aug. 1988.
- Elliott, K.A. and John Williamson, World Economic Problems, IIE, Washington, 1988.
- Greenaway, David, International Trade Policy, The Macmillan Press, London, 1983.
- Hickok, Susan, "The Consumer Cost of U.S. Trade Restraints", FRBNY, Quaterly Review, Summer 1985.
- Hufbauer, G.C., D.T.Berliner and K.A.Elliott, Trade Protection in the U. S., IIE, Washington, 1986.
- Jeon, Bang Nam, and George M.von Furstenberg, "Techniques for Measuring the Welfare Effects of Protection:Appraising Choices", Journal of Policy Modeling, 8(2), 1986.
- Jeon, Bang Nam, "The New Protectionism:the Welfare Effects of Simultaneous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an Exporting Country",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4, no. 2, Summer 1990.
- Kaempfer, W.H., J.H.McClure, Jr. and T.M.Willett, "Incremental Protection and Efficient political Choice between Tariffs and Quotas", Candian journal of Economics, 22(2), May, 1989.
- Magee, S.P., "The Welfare Effects of Restrictions on U.S. Trad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 1972.
- Maskus, Kieth, "Rising protectionism and U.S. International Trade Policy",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July/August 198.
- Melo, J.de and David Tarr, "Welfare Cost of U.S. Quotas in Textile, Steel and Auto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3, August 1990.
- Nogues, J.J., A. Olechowski and L.Alan Winters, "The Extent of Nontariff Barriers to Imports of Industrial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789, 1986.
- Takacs, Wendy, "Pressures for Protectionism:An Empirical Analysis", Economic Inquiry, vol. 19, 1981.
- Whalley, John, "An Evaluation of the Tokyo Round Trade Agreement using

- General Equilibrium Computational methods", Journal of Policy Modeling, 4(3), 1982.
- Whalley, John, Trade Liberalization among Major World Trading Areas, The MIT press, Cambridge, 1985.